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예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7435 발의연월일: 2025. 1. 10.

발 의 자:김예지·김소희·서천호

최수진 · 정성국 · 박덕흠

최형두 • 주호영 • 김상욱

고동진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개선과제를 도출하고, 처우개선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규정이 없어 효과적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실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3년마다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을 처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처우개선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조의2 신설 및 제3조의3 등).

법률 제 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보수 수준"을 "근로여건, 보수 수준"으로 한다.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을 각각 제3조의3 및 제3조의4로 하고, 제3조의2 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건복지부 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및 보수 실태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방향
- 3.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그 밖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3조의3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3(종전의 제3조의2)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4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제3조의4(종전의 제3조의3) 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 제3조의2 및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최초로 제3조제4항에 따른 조사를 실시하는 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행 개 정 아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과 신분보장) ① ~ ③ (생 과 신분보장) ① ~ ③ (현행과 같음) 략) ④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제3항 근로여건, 보수 수준----에 따른 기준의 지방자치단체 별 준수율 등에 관하여 3년마 다 조사 · 공표하여야 한다.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개선 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 건복지부장관은 제3조제4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토대 로 사회복지<u>사 등의 처우개선</u> 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 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 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복지사 등의 근로여건 및 보수 실태

- 2.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 기본방향
- 3. 처우개선에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조달방안
- 4. 그 밖에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
- ③ 기본계획은 제3조의3제2항 에 따른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 우개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기본계획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 다.
-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 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 도지사 • 특별자 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 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 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의2(처우개선위원회) ① (생 | 제3조의3(처우개선위원회) ① (현

략)

② 보건복지부에 두는 처우개 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을 심의한다.

<신 설>

1. ~ 3. (생 략)

③ • ④ (생 략)

② (생 략)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 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 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이하 "권익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행과 같음)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 항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 호까지와 같음)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조의4(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 원센터) ① ---------시 <u>· 도지사</u>-----

② (현행과 같음)